

『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각종 전자문서, 민원서류 발급 등에 사용되는 공인의 글씨체를 알아보기 쉽고 간명한 글씨체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공인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공인의 비치, 사용 대상자 범위 명확화(안 제2조제1항, 제6조제2항)
- 공인의 글씨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조례안은

-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공인 글씨체를 변경하고 공인의 비치, 사용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제명을 「구미시 공인 조례」로 변경하고 각종 서류 발급 등에 사용하는 공인의 글씨체를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